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3.3.21.(화)	
담당부서	금융사기전담대응단	책임자	팀장	서강훈 (02-3145-8521)
	금융사기대응2팀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지영 (02-3145-8534)

택배회사,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!!!

■ 소비자경보 2023 - 9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-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국민들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,
 -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도 불구하고, 방역지원금 제공 등을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피해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

소비자경보 내용

- ◆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,
 - 문자 내 인터넷 주소(URL)를 클릭할 경우,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
- ◆ 또한, 최근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,
 -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,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제보도 수시 입수

⇒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·전화 등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
 (문자)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,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마세요
 (전화)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,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세요

1 사기 수법

1 택배회사 사칭

- (주소 등 불일치 사유 빙자) 사기범은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중에 있으니, 올바른 정보로 변경을 요청한다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
 - 피해자가 문자 내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,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बैं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

주소 불일치 사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

- ◆ 사기범은 OO택배 명의로 “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,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”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, 피해자는 해당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을 설치하였으며, 사기범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बैं킹앱을 접속하여 피해자 자금을 편취

2 정부·공공기관 등 사칭

- ① (허위 방역지원금 안내) 사기범은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며 업주를 기망
 - 사기범은 방역지원금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*를 탈취하여 자금 편취

* 신분증, 신용카드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, 비밀번호 등

허위 방역지원금 제공을 빙자한 사례

- ◆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“코로나19 환자가 가게에 다녀가서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”며,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,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였음. 이에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자, 사기범은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여 타인 명의 여러 계좌로 직접 이체

② (허위 정책지원금 안내)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생활안정자금, 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소비자를 유혹

-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사기범은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, 정책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유도

허위 정책지원금 지원을 빙자한 사례

- ◆ 사기범은 "OO부가 주관하고 OO재단이 보증하는 생활안정자금 긴급 생계지원 대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"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, 조기마감이 예상된다고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안내
- ◆ 사기범은 "경제활동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"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, 재정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생계부담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상담 및 비대면 대출 신청을 유도

2 소비자 행동 요령

□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

- (택배회사 사칭)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,
 - ①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, ②문자메세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
- (정부기관 등 사칭) 정부·공공기관, 금융기관은 전화·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,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

※ 방역지원금,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, 신용카드 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

□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

-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(신용)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

-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**모바일 백신앱**(최신 버전 업데이트)으로 검사 후 삭제, ②**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**, ③**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**해야 함

□ **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**

- 사기범의 **원격조종 악성앱**이 개인 휴대폰에 설치될 경우 **사진첩, 파일폴더, SNS 전송 내역** 등에 보관되어 있는 **개인정보**(신분증, 신용카드, 운전면허증, 기타 계약서 등)가 노출되어 **피해가 가중될** 우려

□ **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**

- **(지급정지)**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**금융회사 콜센터** 또는 **금융감독원 콜센터(☎1332)**에 즉시 전화하여 해당 계좌 **지급정지**를 요청하고 **피해구제를 신청**
- **(개인정보 노출 등록)**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**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'파인'의 『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*』**을 활용

*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

- **(내계좌 한눈에 및 내계좌 지급정지)** 금융결제원의 『**계좌정보 통합 관리서비스(www.accountinfo.or.kr)**』, 금융감독원의 『**금융소비자 포털 파인(fine.fss.or.kr)**』을 활용하여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**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**,
 -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'내계좌 지급정지' 메뉴에서 **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**를 신청할 수 있음
- **(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)**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**조회**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『**명의도용 방지서비스(www.msafes.or.kr)**』의 **가입사실 현황조회** 또는 **가입제한 서비스** 등을 이용할 수 있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<금융소비자 정보포털(파인) : ①개인정보노출등록 및 ②계좌정보통합조회>

<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사이트 : 명의도용방지서비스>

<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(내계좌 지급정지) 주요내용 >

① **이용대상** : 만 19세 이상 내국인

* 미성년자,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

② **대상계좌** :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계좌 중 수시입출금계좌(은행, 저축은행,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우정사업본부) 및 투자자예탁금계좌(증권)

③ **이용채널** :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*, 모바일앱

* www.accountinfo.or.kr

④ **접속방법** : 공동인증서(또는 금융인증서) 및 휴대폰 인증

⑤ **이용시간** : 연중무휴 매일 00:30 ~ 23:30*

* 부국증권, 케이프증권은 07:00 ~ 23:30

⑥ **지급정지 신청** : 고객 본인 쉐 계좌 조회* 및 일괄 지급정지**

* 금융회사명, 관리점, 개설일, 잔액, 계좌번호, 최종입출금일, 오픈뱅킹 등록 여부 등 상세정보 제공

** 정지 대상 거래 :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, 자동이체,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

⑦ **지급정지 해제** : 계좌주 본인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해제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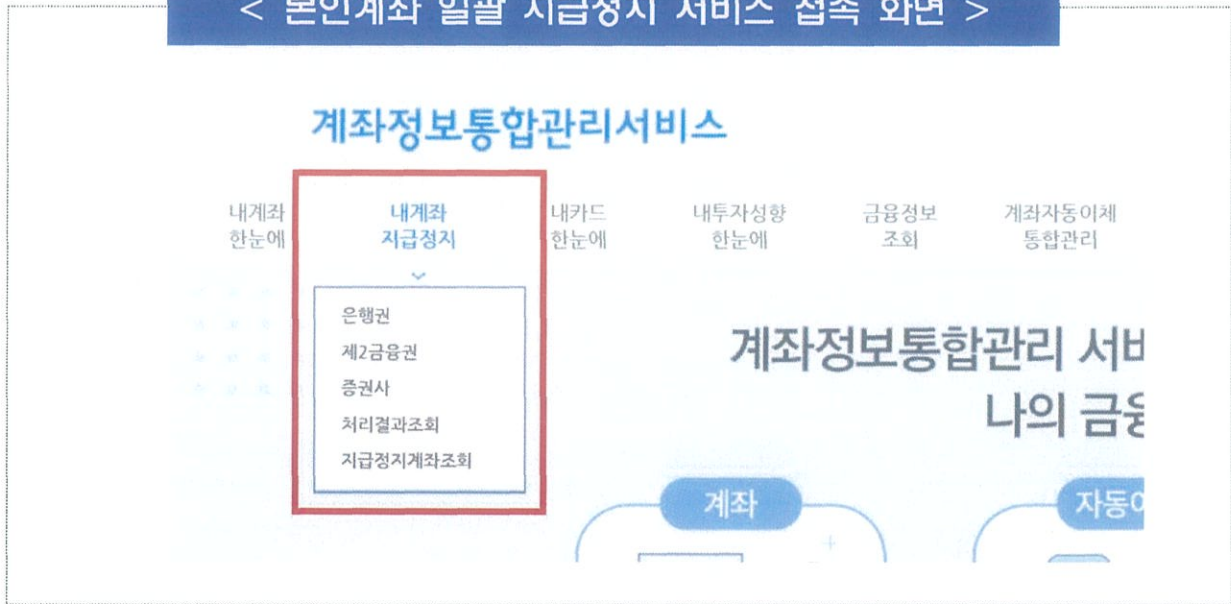
*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신속하게 온라인 처리하는 반면, 해제는 내방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할 필요

붙임3

일괄 지급정지(내계좌 지급정지) 서비스 주요 화면

<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>

<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접속 화면 >



< 지급정지 신청할 계좌 선택 >



< 지급정지 신청 >

* 회색으로 기재된 글씨를 본인이 아래의 칸에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상가의 계좌지급정지 시, 자본이체 를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되며, 지급정지 해제는 원발 계좌개설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함을 안내받았습니다.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·손해 등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
해당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내계좌 지급정지를 신청 합니다.

2022.12.20.

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내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.

성명 (이금용)

취소

지급정지 신청



금융(공동)인증서 전자서명 진행

< 지급정지 신청 완료 >

지급정지 신청 결과

NO	금융회사명	계좌번호	지점명	신청일자	처리결과
1	SC제일은행	860202***08	강남	2022.12.20	처리성공
2	대구은행	5081418***36	본점영업부	2022.12.20	처리성공

- 지급정지 해제는 여카운트인포에서 불가하며, 각 계좌 개설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. ②

- 본 서비스는 기 보유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니다.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·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(pd.fss.or.kr)에 등록하고 개별금융기관에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.

<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앱>

서비스 접속화면

홍길동님, 안녕하세요!
조회기준일 : 2023-01-06

공차사항이 없습니다.

내 계좌 지급정지 | 카드 보안카드 발급화 | 내 모은방금 환승에 | 내 투자성실 환승에

자주쓰는 계좌 | 자주쓰는 카드

지급정지 신청할 계좌 선택

내 계좌 지급정지

은행권

- 하나은행 2건
 - 금여하나통장 07 999,941원
 - 머니뱅크통장 07 지급정지중 81,805,803원
- 신한은행 2건
 - 보통예금 10 1 257,636,726원
 - 신한투자증권공동계좌 110540* 2개 선택 > 1,075,013원

➔

지급정지 신청

내 계좌 지급정지 신청서

고객 확인사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지급정지가 필요한 계좌에 한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계좌지급정지 시 자동이체금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되며, 해당 계좌에 연결된 직불·체크카드 이용 또한 제한됩니다.
-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본인의 지급정지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·요금·대출원리금 등의 미납,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·추심 등 법정에 따른 강제집행 및 관리행사가 우선됩니다. 단,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(이하 피호법)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지급정지 해제는 각 계좌별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능하며, 금융회사가 다 해제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신청 정보

신청업무: 지급정지

신청사유: 금융사기 피해 발생 / 금융사기 피해 우려

신청계좌(총 2건)

하나은행 109	07
신한은행 10	1

신청인 정보

전자서명

지급정지 신청 완료

지급정지 처리 결과

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. 아래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하나은행
 - 금여 하나 통장 처리성공 109 07 999,941 원
- 신한은행
 - 보통예금 처리성공 10 1 257,636,726 원

이전과 달리,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각 계좌별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, 본인 확인 절차는 동일합니다.

본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(이하 피호법)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지급정지 해제는 각 계좌별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능하며, 금융회사가 다 해제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가운데 지급정지 해제 방법 확인하기

확인